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8
----------	-----

제출연월일 : 2011. 7. .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통·반 설치 기준을 조정하여 통·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통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6항

나. 통·반 설치기준 조정(안 제3조)

- 통은 6개반 내지 10개반 295세대 이내, 반은 44세대 내외 ⇒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 반은 4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

다. 통장 위촉 상한연령 폐지(안 제5조제2항)

-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 인구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현행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통장의 위촉 상한연령을 폐지함

라. 통장 모집방법 신설(안 제5조제4항)

- 통장 위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의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통장을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2011. 6. 13. ~ 7. 2.(의견 2건 제출)

제출일	제출자	의견내용	답변내용									
2011. 6. 16	다운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위촉 상한연령 폐지보다는 적정 상한선 유지 ○ 상한선을 65세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일 : 2011. 7. 4 ○ 내 용 : 관련 조례(안) 개정에 참고 									
2011.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구1동 - 제3통장 주경자 - 제7통장 김혜경 - 제8통장 최귀남 - 제9통장 이순옥 - 제10통장 박미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반설치 기준 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통설치 기준</th> <th>반설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입법예고(안)</td> <td>6개반~10개반</td> <td>단독: 40세대 이상 공동: 60세대 이상</td> </tr> <tr> <td>조정요구</td> <td>5개반~10개반 250세대</td> <td>단독: 35세대 이상 단독+공동주택 : 45세대 이상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위촉 상한연령 폐지보다는 65세로 제한 	구분	통설치 기준	반설치기준	입법예고(안)	6개반~10개반	단독: 40세대 이상 공동: 60세대 이상	조정요구	5개반~10개반 250세대	단독: 35세대 이상 단독+공동주택 : 45세대 이상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일 : 2011. 7. 4 ○ 내 용 : 관련 조례(안) 개정에 참고
구분	통설치 기준	반설치기준										
입법예고(안)	6개반~10개반	단독: 40세대 이상 공동: 60세대 이상										
조정요구	5개반~10개반 250세대	단독: 35세대 이상 단독+공동주택 : 45세대 이상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동”을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4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책 전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동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확정공고 한다”를 “확정 공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5일이내”를 “5일 이내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두어야하고”를 “두어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통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30세이상 60세이하”를 “해당 통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④ 통장의 선출방법은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 방법 등 공개모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임기전”을 “임기만료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체 정신상”을 “신체·정신상”으로, “1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 “임기중”을 “임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통·반장의 품위손상”을 “그 밖에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는”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 법령에 의하여”를 “그 밖의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년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동공무원”을 “동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장 및 반장에게는”을 “통·반장에게는”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하부조직)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p>	<p>제2조(하부조직)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 -----.</p>
<p>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통은 6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p> <p>2. 반은 44세대 내외로 하고, 통은 295세대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조정할 수</p>	<p>제3조(설치기준) ----- - 각 호-----.</p> <p>1.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4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p> <p>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책 전달의 편의와 취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동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있다.	
<p>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동장이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u>확정공고</u>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u>의하여</u>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결과를 <u>5일 이내</u> 울산광역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 ----- ----- -----<u>확정공고</u>한다.</p> <p>②-----<u>따라</u>----- ----- -----<u>5일 이내</u>에----- -----.</p>
<p>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u>두어야</u>하고, 반에는 반장을 들 수 있다.</p> <p>② 통장은 <u>당해 통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60세 이하</u>의 자로서 국가관 및 구민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p> <p>③ <u>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후 해촉한다. 다만</u></p>	<p>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u>두어야</u> 하고----- -----.</p> <p>②-----<u>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u>----- ----- ----- ----- ----- -----.</p> <p>③ <u>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u></p>

현행	개정안
<p>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p>	<p>자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신설></p> <p>④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동장이 위촉한다.</p> <p>⑤ 반원 중 지식층 인사의 협조 참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p> <p>⑥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그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p>	<p>④ 통장의 선출방법은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 방법 등 공개모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⑤-----해당----- ----- ----- -----.</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6조(통·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p>	<p>제6조(통·반장의 해촉)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임기만료 전----- -----.</p> <p>1. 신체·정신상-----1개월 -----</p>

현행	개정안
<p>우</p> <p>2. (생략)</p> <p>3. <u>임기중</u>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진출할 때</p> <p>4. <u>기타 통·반장의 품위손상</u> 등 동장이 부적당하고 인정할 때</p>	<p>2. (현행과 같음)</p> <p>3. <u>임기 중</u>----- -----</p> <p>4. <u>그 밖에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는</u> -----</p>
<p>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u>각호</u>의 업무를 처리한다.</p> <p>1. ~ 8. (생략)</p> <p>9. <u>기타 법령에 의하여</u> 부여된 업무 및 구·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p>	<p>제7조(임무)----- -----<u>각 호</u>-----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그 밖의 법령에 따라</u>----- ----- -----</p>
<p>제9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제9조(비밀유지) ①----- -- -----<u>아니</u> <u>된다</u>.</p> <p>②----- ----- ----- -----<u>아니 된다</u>.</p>
<p>제10조(편의제공) ① (생략)</p> <p>②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u>범위</u></p>	<p>제10조(편의제공) ① (현행과 같음)</p> <p>②-----<u>범위에서</u></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28]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7. 7(목)

나. 제출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11. 7. 7(목)

라. 위원회 상정 : 2011. 7. 20(수)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병진)

- 통·반 설치 기준을 조정하여 통·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통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나. 통·반 설치기준 조정(안 제3조)

- 통은 6개반 내지 10개반 295세대 이내, 반은 44세대 내외
⇒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 반은 4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

다. 통장 위촉 상한연령 폐지(안 제5조제2항)

-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 인구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현행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통장의 위촉 상한연령을 폐지함

라. 통장 모집방법 신설(안 제5조제4항)

- 통장 위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의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통장을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 신설

5.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6.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반 설치 기준 등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통·반 설치 기준 조정 및 통장 위촉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노령인구 행정참여를 넓히고,
 - 통장 모집방법을 공개모집, 또는 주민합의 추천제를 원칙으로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규정 신설로,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우리 중구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기존 통·반세대의 편차가 높은 편으로서 통·반 설치기준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통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예산수반이 따르나, 우리시 남구, 동구, 울주군이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

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단지, 본 조례 개정 조례안 대로 통·반을 조정할 경우 기존의 통·반 대비 증·감은 어느 정도 인지, 설명바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